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2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3. E

변론 종결2024. 11. 7.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2021. 7.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소외 F에게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3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이하 '채무자'라 한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1차전117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0. "채무자는 원고에게 13,190,783원 및 그 중 6,785,833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21. 4. 30.경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의 어머니인 G가 2021.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채무자와 피고들, 소외 H, I이 있어서, 채무자의 G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1/6이다.

다. 망 G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3019호로 2021.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이외에 J, K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최근 L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하여 살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1/6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 중 피고들이 어머니인 망 G를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신축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들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주장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피고들별로 각 4/72 지분($= 1/6 \times 4/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